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장관)
연 월 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 이유

상표법 개정(법률 제19809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을 통해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위한 절차 및 서식을 신설하고, 그 밖의 용어 정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관련 용어 정비(안 제59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를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상표권자’로 명확히 함

나.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절차의 도입(안 제87조의3, 제87조의4, 별지서식 제43호, 제44호)

1)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을 위한 절차를 신설함(안 제87조의3 및 제87조의4)

2)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을 위한 서식을 신설함(안 제87조의3)

다.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을 위한 보정 절차를 마련함(안 제88조의2)

라. 상표 공존 동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존 서식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별지서식 제2호, 제3호, 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하려는 자”를 “하려는 상표권자”로 한다

제8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3(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분할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하려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함께 보정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4호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8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4(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법 제94조에 따른 분할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4호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의 보정) ① 제87조의3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87조4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특허청장은 제87조의3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87조4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③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제27조의2(3)에 따른 국제사무국이 통지한 하자에 대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국제사무국이 하자를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보완)서에 보정한 별지 제44호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8호가목의 4)를 5)로 하고,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제35조제6항에 따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서 제출의 경우에는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6호가목의 12)를 13)으로 하고,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제35조제6항에 따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서 제출의 경우에는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보정 구분】에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신청의 보정”, “□ 국제상표등록출원 분할의 상품보정” 및 “□ 국제등록 기초상표권의 분할신청의 보정”을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외의 부분 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정 구분 및 관련 규정

보정 구분	내용	관련 규정
출원서 등 보정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관련 중간서류의 내용의 취지를 보정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32조
상표견본의 보정	상표등록출원의 견본을 보정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32조
시각적 표현의 보정	상표등록출원의 시각적 표현을 보정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32조
수정정관(규약) 제출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수정정관(규약)을 제출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35조
이의신청서 등 보정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이의신청서 또는 관련 중간서류의 내용의 취지를 보정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51조
심판청구서 등 보정	상표심판청구서 또는 관련 중간서류의 내용의 취지를 보정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61조
심판청구서 등 보충	보충요구서를 받고 심판청구서 또는 관련 중간서류의 내용의 취지를 보충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32조
절차보완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보완 명령을 받고서 보완하려는 경우	「상표법」 제37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31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관련 중간서류 내용의 취지를 보정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88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정관(규약) 등 제출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정관(규약) 등을 제출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88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등록	「상표법 시행규칙」 제88조

수정정관(규약) 제출	을 받으려는 자가 수정정관(규약)을 제출하는 경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소리·냄새상표의 소리파일 등의 제출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 소리상표 또는 냄새상표 등 록을 받으려는 자가 소리파일 등을 제출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87조 의2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신청의 보정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을 위한 국제상표의 분할신청서 내용의 취지를 보정하려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88조 의2
국제상표등록출원 분할의 상품보정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을 위해 분할의 기초가 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 분할의 대 상이 되는 지정상품을 삭제보정하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87조 의3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신청의 보정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을 위한 국제상표의 분할신청서 내용의 취지를 보정하려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88조 의2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제상표등록출원 분할의 상품보정의 경우에는 해당 국제상표의분할신청서[별지 제43호서식]
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8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신청의 보정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신청의 보정의 경우

1) 【보정대상항목】 ,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에는 각각 해당 내용을 작성하며, 첨부서
류(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만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합니다.

[예]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첨부서류

【보정방법】 제출

【보정내용】

【첨부서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MM22) 1통

2)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신청을 위해 분할의 기초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보
정하는 경우, 【보정 구분】란에서 ‘☐ 국제상표등록출원 분할의 상품보정’을 선택하고, 상기
지정상품 보정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어 작성합니다. 단, 지정상품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
할 시점에 보정이 완료된 지정상품명을 기준으로 세미콜론(;) 단위의 상품별로 구분하여 작성

해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2호가목의 5)를 6)으로 하고, 5)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또는 제35조제6항에 따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서 제출
의 경우에는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

(앞쪽)

【제출구분】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제출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국제등록번호】

(【국제상표등록출원서의 접수번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원 (기재요령 제5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6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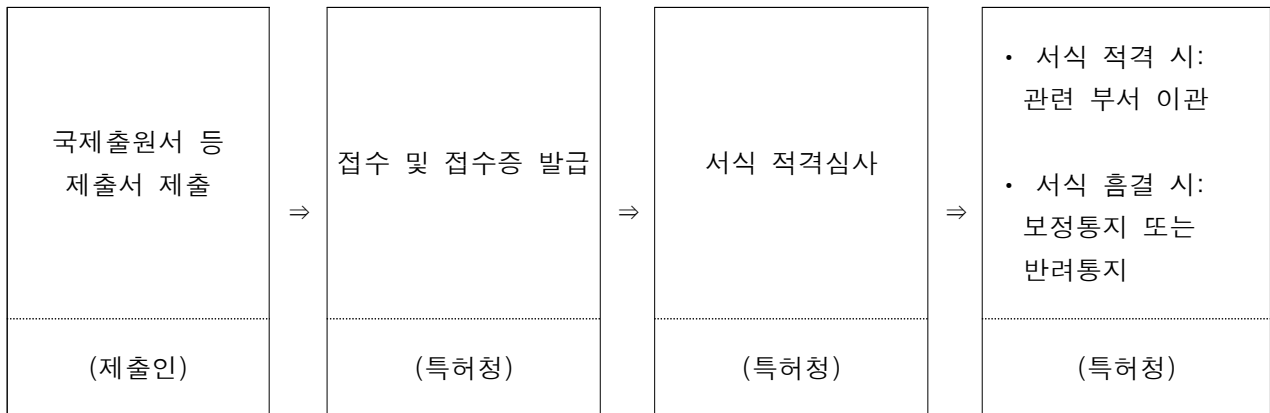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1. 제출 구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마드리드(Madrid)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제출구분	내용	관련 규정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을 하려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87조의3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등록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을 하려는 경우	「상표법 시행규칙」 제87조의4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제출구분】란

제출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제출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 시 적은 영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제출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한글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만큼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다. 공통

- 1)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국제출원인”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제출인】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3. 【대리인】란

-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영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대리인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 ※ 【지정된 변리사】란에는 대리인 신고 시 적은 영문 성명만을 적으며,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지정된 변리사】 HONG Gil Dong, KANG Gam Chan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4. 【사건의 표시】란

서식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국제등록번호】를 적으며, 【국제등록번호】 다음 줄에 【국제상표등록출원서의 접수번호】란을 만들어 국제상표등록출원서의 접수번호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5. 【수수료】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1조를 참조하여 서식제출 후에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5의2.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해야 합니다.

6.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등록의 분할신청서(MM22)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국제등록의 분할신청서(MM22) 1통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의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앞쪽)

MM22 (E) – REQUEST FOR THE DIVISION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For use by the holder:

Number of continuation sheets:

☐ Statement attached in accordance with Rule 27bis(1)(d)¹ (if applicable, check the box).

Holder's reference:

For use by the Office:

Office's reference:

1. CONTRACTING PARTY OF THE OFFICE PRESENTING THE REQUEST

Name of the Contracting Pa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to be divided.

2. NAME OF THE OFFICE PRESENTING THE REQUEST

Must be the Office of the Contracting Party indicated in item 1.

3.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International registration to be divided in respect of the Contracting Party indicated in item 1.

4. NAME OF THE HOLDER²

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1. In accordance with Rule 27bis(1)(d) of the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the Office presenting the request, may check this box and include a statement sent in accordance with either Rule 18bis or 18ter for the goods and services listed in the request.

2. Where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is **jointly owned** indicate the names of each joint holder 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here.

5. GOODS AND SERVICES FOR WHICH DIVISION IS TO BE RECORDED

List of the goods and services to be set apart in the divisional international registration, grouped in the appropriate classes.

☐ If the space provided is not sufficient, check the box and use a **continuation sheet**.

6. SIGNATURE OF THE HOLDER AND/OR THEIR REPRESENTATIVE

Only to be completed by the holder or the holder's representative if required by the Office presenting the request.

Holder (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By signing this form, I declare that I am entitled to sign it under the applicable law.

Name:

Signature:

Representative of the holder (before the Office presenting the request):

By signing this form, I declare that I am entitled to sign it under the applicable law.

Name:

Signature:

7. SIGNATURE OF THE OFFICE PRESENTING THE REQUEST

(a) Name and signature of the official signing on behalf of the Office:

By signing this form, I declare that I am entitled to sign it under the applicable law.

--

(b) E-mail address of the contact person in the Office:

--

METHOD OF PAYMENT

If you want to debit the amount of the fees from your Current Account at WIPO, tick the box and provide the information under item (a). If you have already transferred those amounts to WIPO's bank or postal account, provide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under item (b), which would allow WIPO to identify and allocate your payment.

(a) INSTRUCTIONS TO DEBIT FROM A CURRENT ACCOUNT

- ☐ The International Bureau is hereby instructed to debit the required amount of fees from a current account opened with the International Bureau (if this box is checked, it is not necessary to complete (b)).

Holder of the account:	
Account number:	
Identity of the party giving the instructions:	

(b) BANK OR POSTAL TRANSFER

Identity of the party effecting the payment:			
Payment received and acknowledged by WIPO	☐	WIPO receipt number	
Payment made to WIPO bank account IBAN No. CH51 0483 5048 7080 8100 0 Crédit Suisse, CH-1211 Geneva 70 Swift/BIC: CRESCHZZ80A	☐	Payment identification	dd/mm/yyyy
Payment made to WIPO postal account (within Europe only) IBAN No. CH03 0900 0000 1200 5000 8 Swift/BIC: POFICHBE	☐	Payment identification	dd/mm/yyyy

FEE CALCULATION SHEET

AMOUNT OF FEES

The fee is 177 Swiss francs.	TOTAL (Swissfrancs)	=	177
------------------------------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u>하려는 자</u>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u><신 설></u>	제59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u>하려는 상표권자</u>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87조의3(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분할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하려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함께 보정하여야 한다.</u>

<u><신 설></u>	<u>1. 별지 제44호서식의 국제등록</u>
	<u>의 분할 신청서</u>
<u><신 설></u>	<u>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u>
	<u>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u>
	<u>서류 1부</u>
<u><신 설></u>	<u>제87조의4(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u>
	<u>분할 신청)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u>
	<u>대하여 법 제94조에 따른 분할을</u>
	<u>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u>
	<u>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u>
	<u>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
<u><신 설></u>	<u>1. 별지 제44호서식의 국제등록</u>
	<u>의 분할 신청서</u>
<u><신 설></u>	<u>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u>
	<u>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u>
	<u>서류 1부</u>
<u><신 설></u>	<u>제88조의2(국제상표등록출원의</u>
	<u>분할 신청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u>
	<u>권의 분할 신청의 보정) ① 제87</u>
	<u>조의3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u>
	<u>의 분할 신청 또는 제87조4에 따</u>
	<u>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u>

	<u>청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신 설></u>	<u>1.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u>
<u><신 설></u>	<u>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u>
<u><신 설></u>	<u>② 특허청장은 제87조의3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87조4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u>
<u><신 설></u>	<u>③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제27조의2(3)에 따른 국제사무국이 통지한 하자에 대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국제사무국이 하자를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u>

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보
완)서에 보정한 별지 제44호서
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